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무고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1부  
2. 청 원 서 1부. 끝.

2016 년 8 월 2 일

청 원 인

성 명 : 방은선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방은선 (인) 외 37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방은선
건명	형법 제156조, 제157조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8월 1일
<p>소개의견</p> <p>현재 악의적으로 상대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의 약 1,300건의 무고 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로 텔런트 박유천의 첫 번째 고소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다시 진술을 바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고소인이 진술 번복을 기반으로 박유천 씨의 성폭행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공갈 협박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무고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낮은 형벌 최대치를 전제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1984년 3월 13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동행사죄 부분에 대한 무고죄의 판결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에 반해 성폭행,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중범죄에 관한 무고한 피고의 경우 사회적 명성에 입는 타격이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합니다.</p> <p>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무고죄 형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p>	

소개의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무고죄란 한 개인이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하게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된 사람에게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형법에서는 제 156조에 의거, 자백과 자수 및 무고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과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은 실제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나 무고하게 고소당한 피의자가 사회적 명예와 위치 훼손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겪게 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성폭행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중범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상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유명인의 경우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무고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의 변화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30억에 달했으나, 유명인을 고소한 여성의 경우 그 목적 자체가 불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밝혀지면서 무고죄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피고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아닌, 상대에게 역으로 피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한 처벌 또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형벌의 지속 시간 혹은 벌금의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손익을 보았을 때 무고죄를 선고받는 사람들의 형벌이 터무니없이 미약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와의 합의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피의자들이 무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즉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성이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의 목적 중 하나인 '범죄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중범죄에 한한 항목을 구체화 하여 금전적 이익 혹은 단순 복수의 목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의 사회적 명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형법 제156조,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무고하게 고소당한 피해자 중 중범죄에 관련된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명성의 훼손이나 사회적 위치의 박탈과 같은 부수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 하에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더할 수 있는 경우 무고죄를 선고받은 피고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경우를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②의 형량을 부과한다.

1. 피해자의 소득 변화 급감 여부
2. 피해자의 직장 박탈 가능성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p>형법 제156조(무고)</p> <p>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형법 제157조(자백, 자수)</p> <p>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	<p>형법 제156조 (무고)</p> <p>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무고하게 고소당한 피해자 중 중범죄에 관련된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명성의 훼손이나 사회적 위치의 박탈과 같은 부수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 하에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더할 수 있는 경우 무고죄를 선고받은 피고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②의 형량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의 소득 변화 급감 여부</li> <li>2. 피해자의 직장 박탈 가능성</li> </ol> <p>형법 제157조(자백, 자수)</p> <p><u>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u></p>

청원인 성명 : 방은선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